

인천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214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규남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한정현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2,567,122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67,1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신탁

D은 2015. 8. 31. 인천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D은 2015. 8. 3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권자(수익한도금액 520,000,000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F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7. 11. 24.자 계약

원고와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2017. 11. 24. 당시 진행 중이던 ① 인천 남동구 H 소재 대지 등 3필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채무자 D, 채권자 소외 회사,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J 공매절차(채무자 D, 채권자 소외 회사, 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서, 원고가 ㉠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에 입찰대금을 876,312,000원으로 하여, ㉡ 신탁법상 수탁자이자 소유자인 F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공매의 제8회차 매각기일에 입찰대금을 380,000,000원으로 각각 순차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되, 입찰 결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성사될 경우엔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2018. 1. 16.자 계약

1) 2018. 1. 5.에 열린 이 사건 경매의 제1회 매각기일에 원고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8. 1. 16. 원고가 ㉔ 이 사건 경매 제2회 매각기일에 입찰대금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㉕ 이 사건 공매의 제5회차 매각기일에 입찰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각 입찰에 참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경매의 제2회 매각기일에 K(대리인 L)의 이름으로 750,000,000원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900,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는 못하였다.

라. 2018. 4. 16.자 계약

이 사건 경매에서 낙찰에 실패한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합의한 내용인 공개입찰 참여를 통한 공매 방식 대신 수의계약에 의해 원고가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매 절차는 소외 회사가 F에 요청하여 중지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소 520,000,000원 이상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소유자인 F도 우선수익권자인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권리의무 승계

원고는 2018. 5.경 M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내지 제3계약 상 원고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는데, 소외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바. F의 수의계약 거부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라 M는 D의 채권자 N 등과 협의하여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키고, 수의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F은 2018. 7.말경 사내 법무팀의 의견이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M와의 수의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매를 통해 처분하겠다고 M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 양수

소외 회사는 2019. 3. 13. 피고에게 G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소송 관계

1) M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9406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계약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8. 31. 이 사건 1, 2 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100,000,000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물취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는 M에게 이 사건 제3 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M와 소외 회사는 모두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M는 2022. 1. 24. 원고에게, M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계약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양도하고, 2022. 2. 14. 소외 회사의 대리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소외 회사의 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M를 승계참가 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1. 30. 위 1)항 기재 사건에서도 1심 판결과 판단을 같이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나585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62,567,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21. 1. 14. 임시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19.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총계가 9,444,860,063원, 부채총계가 8,502,824,503원, 자본총계가 942,035,5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에 가까운 위 표준대차대조표 작성 당시 소외 회사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것 외에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를 밝히기 위한 다른 증거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별지